

제6절 복리시설

6.1 관리사무소

6.1.1 고려사항

- ① 위치는 단지 관리와 입주자의 이용성을 감안하여 보행접근과 식별이 용이한 곳으로 한다.
- ② 전기,기계,통신실이 같이있는 경우 설비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가급적 단지 중앙으로 배치한다.

6.1.2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8조)

- ① 50세대 이상 주택단지
- ② 10m² 에 5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 매세대당 0.05m²를 가산한 면적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
- ③ 단, 100m²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면적을 100m²로 할 수 있다.
- ④ 최소 66m²(’96 건축설계기준)

6.2 경로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

6.2.1 고려사항

- ①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의 건강증진,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거주자와의 교류(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포함)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한다.
- ②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경로당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곳에 경로당 건축면적의 50%에 해당하는 네모꼴의 녹지를 부속정원으로 계획한다.(조경설계기준)
- ④ 보행공간 계획시 경로당과 부속정원 사이에는 통과동선을 배제시켜 노인정과 부속정원이 같은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6.2.2 설치기준

- ①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
- ② 40m²에 150세대를 초과하는 매세대당 0.1m²를 가산한 면적.
- ③ 단, 300m²를 초과시는 300m²로 할수 있음.

6.3 주민복지관의 기타시설

시설명	단위	설치 규모	관련법령																																									
방재실	개소	· 가급적 1층에 설치하되, 2층 설치시 전용피난계단 설치	(소방기술기준규칙제10조 3항3호,전기1400-1880('99. 3.16))																																									
		· 관리사무소에서 수시감시할수 있는 투시창 설치																																										
		<table><tr><th rowspan="2">세대수</th><th colspan="3">일반지구</th><th colspan="3">무인경비시스템 적용지구</th></tr><tr><th>가로</th><th>세로</th><th>높이</th><th>가로</th><th>세로</th><th>높이</th></tr><tr><td>500세대미만</td><td>5.0m</td><td>4.0m</td><td>2.5m</td><td>5.0m</td><td>5.5m</td><td>2.5m</td></tr><tr><td>1,000세대이하</td><td>5.0m</td><td>4.5m</td><td>2.5m</td><td>5.5m</td><td>5.5m</td><td>2.5m</td></tr><tr><td>1,500세대이하</td><td>5.0m</td><td>5.0m</td><td>2.5m</td><td>6.0m</td><td>6.0m</td><td>2.5m</td></tr><tr><td>2,000세대이하</td><td>5.0m</td><td>5.5m</td><td>2.5m</td><td>6.5m</td><td>6.5m</td><td>2.5m</td></tr></table>		세대수	일반지구			무인경비시스템 적용지구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	500세대미만	5.0m	4.0m	2.5m	5.0m	5.5m	2.5m	1,000세대이하	5.0m	4.5m	2.5m	5.5m	5.5m	2.5m	1,500세대이하	5.0m	5.0m	2.5m	6.0m	6.0m	2.5m	2,000세대이하	5.0m	5.5m	2.5m	6.5m	6.5m	2.5m
		세대수			일반지구			무인경비시스템 적용지구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																																			
		500세대미만		5.0m	4.0m	2.5m	5.0m	5.5m	2.5m																																			
		1,000세대이하		5.0m	4.5m	2.5m	5.5m	5.5m	2.5m																																			
1,500세대이하	5.0m	5.0m	2.5m	6.0m	6.0m	2.5m																																						
2,000세대이하	5.0m	5.5m	2.5m	6.5m	6.5m	2.5m																																						
MDF 실 (통신용 주배전반)	소	· 평형에 관계없이 전단지에 설치	(주택법시행령제24조 4항 별표2의5호) 전기통신차-3038 (*05.09.30)																																									
		· 공사 자체기준 : 정통 8121-30951(*02.12.3)																																										
		<table><tr><th>세대수</th><th>1등급</th><th>특등급</th></tr><tr><td>~ 300세대</td><td>12㎡이상</td><td>12㎡이상</td></tr><tr><td>~ 500세대</td><td>16㎡이상</td><td>18㎡이상</td></tr><tr><td>~ 1,000세대</td><td>20㎡이상</td><td>22㎡이상</td></tr><tr><td>~ 1,500세대</td><td>25㎡이상</td><td>28㎡이상</td></tr><tr><td>~ 1,500초과</td><td>30㎡이상</td><td>34㎡이상</td></tr></table>		세대수	1등급	특등급	~ 300세대	12㎡이상	12㎡이상	~ 500세대	16㎡이상	18㎡이상	~ 1,000세대	20㎡이상	22㎡이상	~ 1,500세대	25㎡이상	28㎡이상	~ 1,500초과	30㎡이상	34㎡이상																							
		세대수		1등급	특등급																																							
		~ 300세대		12㎡이상	12㎡이상																																							
		~ 500세대		16㎡이상	18㎡이상																																							
		~ 1,000세대		20㎡이상	22㎡이상																																							
~ 1,500세대	25㎡이상	28㎡이상																																										
~ 1,500초과	30㎡이상	34㎡이상																																										
보육시설	㎡	· 300호이상 단지에 설치	(주택건설규정제55조) (영유아보육법 제8조 및 시행규칙 별표2)																																									
		· 규모 : 영유아 20인 이상(500호 이상인 경우는 40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설치 (단, 통행거리 300m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등 4항목의 경우 제외 가능)																																										
		· 유아놀이터 : 법상 52인이상 규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를 권장하며, 영유아 1인당 2.5㎡ 이상으로 하고 모래밭 및 놀이시설 3종 이상을 설치 (면적은 어린이 놀이터 면적으로 산입) ※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함.																																										
		* 주공 기준 : 단계 1223-61('95. 2. 2)																																										
		<table><tr><th>단지구분</th><th>전체면적</th><th>보육실전용면적 (거실,포복실,유희실)</th></tr><tr><td>500~750호</td><td>35명×4.29㎡=150.15㎡</td><td>35명×2.64㎡=92.4㎡</td></tr><tr><td>750~1300호</td><td>43명×4.29㎡=184.47㎡</td><td>43명×2.64㎡=113.52㎡</td></tr><tr><td>1300호이상</td><td>54명×4.29㎡=231.66㎡</td><td>54명×2.64㎡=142.56㎡</td></tr></table>		단지구분	전체면적	보육실전용면적 (거실,포복실,유희실)	500~750호	35명×4.29㎡=150.15㎡	35명×2.64㎡=92.4㎡	750~1300호	43명×4.29㎡=184.47㎡	43명×2.64㎡=113.52㎡	1300호이상	54명×4.29㎡=231.66㎡	54명×2.64㎡=142.56㎡																													
		단지구분		전체면적	보육실전용면적 (거실,포복실,유희실)																																							
		500~750호		35명×4.29㎡=150.15㎡	35명×2.64㎡=92.4㎡																																							
750~1300호	43명×4.29㎡=184.47㎡	43명×2.64㎡=113.52㎡																																										
1300호이상	54명×4.29㎡=231.66㎡	54명×2.64㎡=142.56㎡																																										
탁아소	㎡	· 100호 이상의 60㎡이하 근로자 주택 건설시 설치	(주택건설규칙 별표1)																																									
		· 규모 - 100호이상 300호미만 : 100㎡이상 - 300호이상 : 50㎡+300호를 초과하는 매세대당 0.2㎡이상 (단, 300㎡ 초과시 300㎡로 할 수 있음)																																										
		* 100㎡ 이상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시설명	단위	설치 규모	관련법령
체력 단련실	㎡	· 100호이상의 근로자주택을 건설시 설치 · 규모 : 1,000호 미만시 1개소 1,000호 이상시 2개소	(주택건설규칙 제2조)
문고	㎡	· 300호 이상 단지에 설치 · 규모 : 전용면적 33㎡ 이상 * 내부기준 : 복리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100~500세대 : 53㎡이상 500~1,000호 : 80㎡이상 1,000~1,500세대 : 42㎡이상	(주택건설규정 제55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
주민공동 시설	㎡	· 300호 이상에 설치 · 면적은 50㎡에 300호 초과 매호당 0.1㎡ 가산, 다만 300㎡ 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 공동주택 지하층 활용 가능	(주택건설규정 제55조)
전기실	㎡	· 전기실 (6층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 <u>단지 규모</u> <u>전기실 규모 (WxDxH)</u> 500 이하 13,000 x 10,700 x 4,400 1000 이하 13,600 x 10,700 x 4,400 1500 이하 14,200 x 10,700 x 4,800 2000 이하 14,200 x 10,700 x 4,800 * 단위주택 규모가 60㎡미만으로만 구성된 경우임. * 위의 치수는 내부유효치수 · 발전기실(6층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 <u>발전기 규격</u> <u>발전기실 규모 (WxDxH)</u> 250 Kw이하 6,600 x 4,000 x 4,400 500 Kw이하 7,200 x 4,500 x 4,800 750 Kw이하 9,000 x 4,900 x 4,800 1000 Kw이하 9,500 x 5,100 x 4,800 1500 Kw이하 10,000 x 5,200 x 4,800 * Kw = 적용 세대수 x 0.6Kw.	전기통신처-3012 (*05.09.29)

6.4 근린생활시설 등(근린생활시설·소매시장·상점)

6.4.1 고려사항

- ① 위치와 규모는 주변상권 및 개발 전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근린생활시설 분양대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단지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용성 및 분양성을 감안하여 근린생활시설 주진입을 단지내 도로에 면하게 한다.
- ④ 소규모 단지에는 분양성을 감안하여 단층형으로 배치하고, 전면도로는 충분한 여유폭을 확보하고 가급적 전면에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 ⑤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광장 등과 근접시켜 근린생활시설 이용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
- ⑥ 주차장의 위치는 주진입 동선에 근접시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며 별도의 구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⑦ 화물용 승강기 또는 리프트가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은 화물용 승강기 또는 리프트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⑧ 화장실은 평면배치상 중요도가 높지 않은 측후면 부위에 배치하며 1개소는 장애인 겸용으로 설치한다.

6.4.2 설치기준

- ①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은 매 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하.
- ②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을 500㎡로 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4.3 주택과의 복합건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 ①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 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 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5 유치원

6.5.1 고려사항

- ① 위치는 원아의 안전을 위해 보행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한다.
- ② 분양대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게 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한다.
- ③ 대지형상은 건축계획을 감안하여 남북측이 장변이 되게 한다.
- ④ 대지의 최소 폭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어건에 따라 실제 건축 가능한 폭으로 한다.
- ⑤ 유아교육시설을 건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적용도면 및 설계도면을 사전에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 ⑥ 유치원은 특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유원장과 교실, 유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실에는 충분한 일조 및 채광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6.5.2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 ①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 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 ㉡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주택의 100분의 60이상인 경우
 - ㉣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6.5.3 시설기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① 교사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 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 m²)

구 분	교사의 기준면적	
	40명 이하	41명 이상
유 치 원	5N	80+3N

※ N : 각급학교 전학년 학생정원

② 교사용 대지

건축관련 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③ 체육장(유원장)

각급 학교의 체육장(옥외 체육장을 말한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위 : m²)

구 분	체육장의 기준면적	
	40명 이하	41명 이상
유 치 원	160	120+N

※ N : 각급학교 전학년 학생정원

※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④ 교지

각급 학교의 교지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6.6 주민운동시설

6.6.1 정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 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6.6.2 고려사항

- ① 소음을 감안하여 주거동 전면 또는 주거동 사이에는 가급적 피한다.
- ② 이용성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보행동선과 연결시킨다.

6.6.3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3조)

- ① 500세대를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구 분	체 육시 설 종 류 (제2조 관련)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볼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록수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측벽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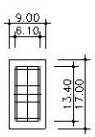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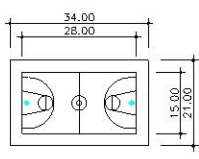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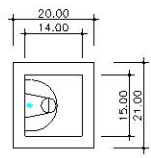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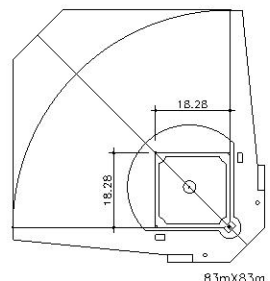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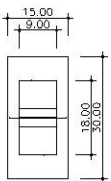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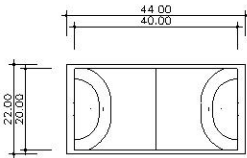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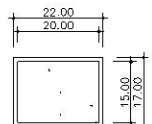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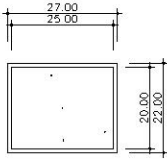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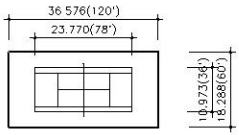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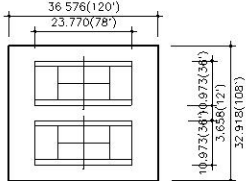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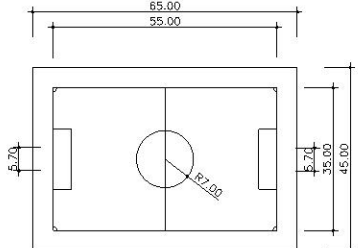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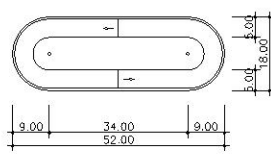
6.6.4 운동시설 규격

종 류	경기면 치수(m)	사용면 크기(m)	비 고
테 니 스 장	10.97X23.77	18.24X36.57	국제규격
배 구 장	9X18	15X30	국제규격
농 구 장(반코트)	15X28(15X14)	21X34(21X20)	국제규격
배 드 민 턴 장	6.1X13.4	9X17	국제규격
핸 드 볼 장	20X40	22X44	국제규격
씨 림 터	반지름 4.5이상	반지름 6.5이상	
롤러스케이트장	폭 : 18 길이 : 52	폭 : 30 길이 : 64	
소 년 축 구 장	35X55	45X65	축구장: 105X68
소 년 야 구 장	18.28 (다이아몬드)	83X83	야구장:27.4 (다이아몬드)
게 이 트 볼 장	20X25 15X20	22X27 17X22	· 대형 · 소형

※ 단지계획시 경기장 사용면크기로 설치하되, 주위에 여유공간을 두어 계획

※ 참고자료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체육청소년부, 체육시설 규격집. 1993

■ 운동시설 규격

 · 배드민턴코트	  · 농구코트	 · 소년야구장
 · 테니스코트	 · 씨름터  · 핸드볼장	 소형  대형 · 게이트볼장
 1 란형  2 란형 · 정구코트	 · 소년축구장	 · 롤러스케이트장

[그림6-1] 운동시설 규격표

6.7 어린이 놀이터

6.7.1 고려사항

- ①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② 안전시설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보행자 도로와 접하게 설치한다.
- ③ 소단지일 경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과 인접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대단지일 경우 300~400호 마다 1개소씩 분산 배치한다.
- ④ 어린이공원과는 이용권을 감안하여 적정분산 배치한다.
- ⑤ 어린이놀이터가 가급적 지하저수조 상부에 설치되지 않도록 배치

6.7.2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46조)

- ①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 ㉡ 1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②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보육시설·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이

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④ 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어린이 놀이터의 면적산정에 관한 질의회신사례 (지도30402-?('85. 2.27))

- 질의 :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함에 있어 폭이 사방9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과 함께 폭 9미터 미만의 부분도 동 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 회신 :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폭9미터 이상이라 함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9미터인 정방형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대지이어야 할 것임

- ⑤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놀이시설물 및 어린이놀이터내 체력단련시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⑥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6.7.3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 ① 도시계획시설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의한법률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결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6조2항 내지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